

국민의 소리를
제도와 정책의 중심에

제 453호
2018 | 02 | 09

국민의 소리

주간동향

(2018. 2. 1. ~ 2. 7.)



국민권익위원회

목 차

제453호

I. 주간 민원동향	1
1. 민원 추이	1
2. 주요 민원동향	1
II.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	5
○ 아이돌봄사업 신청관련 복지로시스템 개선 요청	
○ 신혼부부 인정기간 확대 요청	
III. 국민불편 개선 사례	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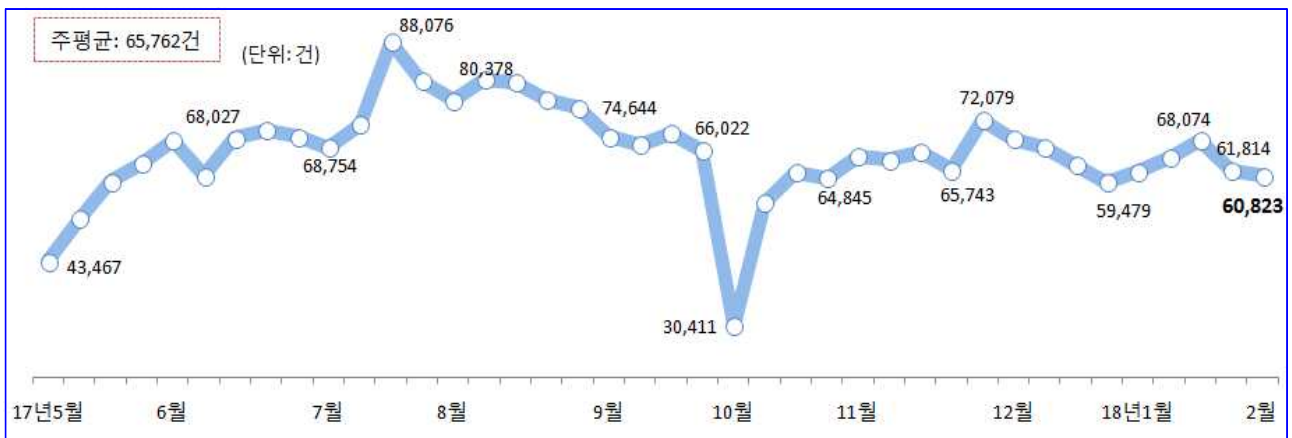
I

주간 민원동향

1 민원 추이

- 2월 첫째 주 민원은 총 60,823건으로 지난주(61,814건) 대비 1.6% 감소
- 2018.1.1.~2.7. : 총 344,792건(새정부 출범이후 2,630,478건)

(신청일 기준)



2 주요 민원동향

유형	민원 요지	건수	소관기관
피해	구리 갈매지구 ○○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대책마련	96	구리시, 한국토지주택공사
갈등	하남 위례신도시 자동차정비소 허가 반대	91	경기도 하남시
피해	원주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폐쇄 요청	49	강원도 원주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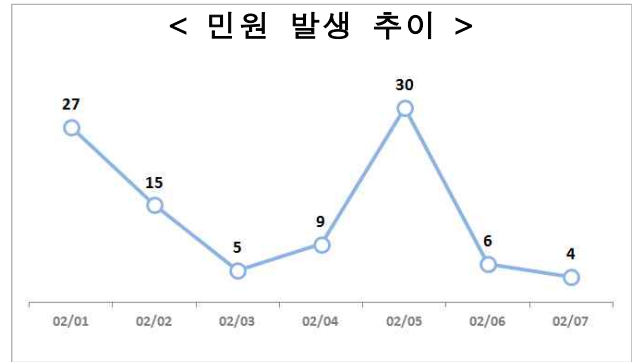
※ 건수 : 2018.2.1.~2.7. 중 발생한 민원 건수

- 피해 : 관계기관의 처분,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를 호소하는 민원
- 갈등 :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발생한 민원

① 구리 갈매지구 ○○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대책마련(피해)

□ 구리시 갈매지구 ○○아파트 수도관 동결 등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 보상과 재시공을 요구하는 민원

- 2월 5일 30건 접수 등
지난 한 주간 총 96건 발생
(일 평균 13.7건)



□ 민원 주요내용은 한파로 인한 수도관 동결, 세탁실 결빙 방지를 위한 재시공, 입주민 피해보상, 시방서에 따른 재시공 요청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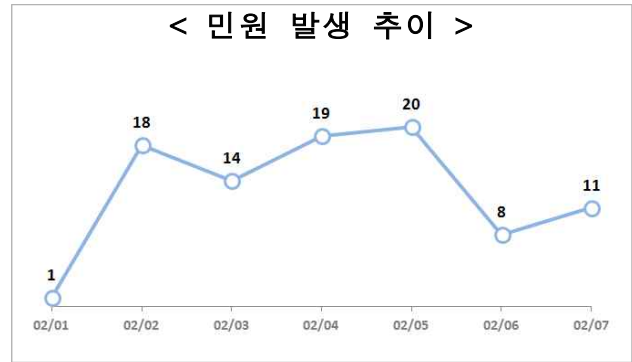
< 주요 민원 >

- 현재 갈매지구에 시공되어있는 공공주택단지에서 한파로 인해 수도관동결, 세탁실 및 세탁기 결빙, 벽면 결빙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
- 원인은 시방서상에는 결로저감용 단열재와 탄성코트가 시공되도록 되어있으나 결로 저감용 단열재는 미시공된 채 탄성코트로만 시공되어 있고 수전설비 외벽 부분을 단열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임
- 갈매s1블록은 올해 9월 입주 예정을 앞두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갈매지구 내 LH가 시공한 거의 전 세대에서 상기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,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재차 같은 방식으로 시공을 완료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 행위이자 공기업으로서 업무능력 미달이라고 생각함
- 설계시방서상 미시공된 단열재 시공과 수전위치 변경 및 수도관 결빙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입주민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함
- 설계 시방서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 및 행정처분 부탁드립니다며 주거복지를 위한 공기업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주기 바람

② 하남 위례신도시 자동차정비소 허가 반대(갈등)

□ 하남시 위례신도시 C3-2블럭 주거용지 인근에 자동차정비소 설치 허가를 반대하는 민원

- 4일 19건, 5일 20건 접수 등
지난 한 주간 총 91건 발생
(일 평균 13건)



□ 민원 주요내용은 주거용 오피스텔 옆에 유해물질을 유발하는 자동차 정비소 설치허가 반대, 정비공장 예정지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요청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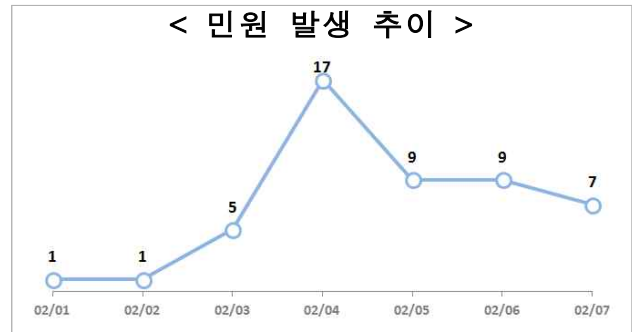
< 주요 민원 >

- 하남시 학암동에 소재한 주거용 오피스텔 옆으로 각종 페인트, 신나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색 및 판금 등 유해물질을 유발시키는 자동차정비소 설치를 허가해 주는 행위는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반대함
- 옥시의 유해물질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유해물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주거시설이 있는 곳으로 화재 위험과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자동차정비소 설치를 허가해주면 안됨
- 자동차정비업소는 폐유와 각종 유해물질, 발암물질 등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으로 주거지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아파텔에는 어린이집도 이미 지어져 입주예정이므로 정비업소 설치허가 결사반대
- 정비공장 예정지는 어린이집과 놀이터와의 불과 몇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심히 걱정되니 하남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요청

③ 원주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폐쇄 요청(피해)

□ 인체에 유해한 연료를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열병합발전소 폐쇄를 요청하는 민원

○ 4일 17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49건 발생(일 평균 7건)



□ 민원 주요내용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, 인체에 치명적인 원료사용 여부 조사, 연료변경 및 폐쇄요청 등

< 주요 민원 >

- 원주기업도시내에는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열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, 쓰레기를 태우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다른 발전시설로 대체해 주기 바람
- 원주시 지정면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에서 쓰레기가 아닌 페타이어, 생활폐기물, 폐합성수지류(플라스틱), 폐합성섬유류, 폐고무류 등을 사용함으로써 인체에 치명적인 원료가 쓰인다고 하니 철저히 조사해서 폐쇄조치 해주기 바람
- 원주라는 곳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생활하려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 이후 열병합 시설이 생긴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걱정이 됨. 열병합 시설이 유해 시설이므로 설치를 반대함
- 기업도시 열병합 발전소 폐지를 적극 바라지만 시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연료만이라도 변경해주기 바람

II

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

사 례 제 목	소 관 기 관
아이돌봄사업 신청관련 복지로서스템 개선 요청	여성가족부
신혼부부 인정기간 확대 요청	국토교통부

-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는 민원 모니터링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민원을 선별한 것입니다.
- 소관기관에서는 동일 유사한 민원(국민불편)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,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이돌봄사업 신청관련 복지시스템 개선 요청

[여성가족부]

-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연령, 양육공백,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및 복지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있음
- 복지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경우 양육공백과 소득합산 범위가 명확한 직장보험가입자 부부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정만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한부모 가정은 인터넷신청이 불가능함
 - ※ 주민등록표에 조부모와 같이 거주하거나 일반 한부모가정,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일용직, 시간제근로자,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정확한 양육공백 확인이 불가능하여 가구원수 등 파악을 위해 주민센터에 신청해야함
-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가정이 복지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

신혼부부 인정기간 확대 요청

[국토교통부]

-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한 혼인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것은 신혼부부에게 주택공급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함
- 하지만 신혼부부 전용대출*시 신혼부부 인정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까지만 인정되어 특별분양을 받더라도 입주까지 소요되는 2~3년을 감안하면 실제로 신혼부부 특별대출을 받지 못하게 됨
- *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: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의 무주택신혼부부가 생애최초 구입할 경우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상품
-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용대출시에 적용되는 기간도 신혼부부 인정기간을 7년으로 확대해 주기 바람

Ⅲ

국민불편 개선 사례

□ 민원 사례

주간동향 제435호('17.9.27.)

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시간 다양화

- 전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 중이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임. 도로교통공단에 교육 시간을 문의해 본 결과 매달 둘째, 넷째 수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안내 받음. 다른 시간대 교육은 없냐고 문의하니 없다고 함
- 과거에는 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, 유치원 관계자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교육을 시행해도 모두 참석이 가능했겠지만, 지금은 교육 대상자가 체육관, 속셈, 미술, 피아노 등 관계자들로 다양해져 교육 시간의 다양화 또는 조정이 필요함
- 교육 대상자 대다수가 참석할 수 있고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을 다양화해주기 바람

□ 개선내용

소관기관: 도로교통공단

- 현행 10:30~13:20(3시간) 교육시간을 09:30~12:20으로 변경하는 등 교육 신청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수강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